

[유치원분쟁]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 +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적립금 유용 사안: 행정심판 재결



1. 사안의 개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원장이 보육 교직원 퇴직적립금 유용 사실 적발
+ 교육청에서는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해지 처분을 함

2. 어린이집 대표의 불복사유 -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가.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은 ○○○을 원장으로 선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실질적 역할을 맡기고 청구인은 최소한의 관리 감독만을 하고 있던 중 원장의 어린이집 자금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전 원장이 보육 교직원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유용 및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횡령한 금전 속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를 보조금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가사 원장이 횡령한 금전이 보조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원장 개인의 횡령으로 대표 청구인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 영유아복지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행정제재의 규정을 두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행위를 어린이집 운영자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원장의 횡령에 대하여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7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20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월지급액,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의 80% 또는 30%를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퇴직적립금 해당 금액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어린이집에서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적립금 보관 용도의 계좌에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 사건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 중 퇴직적립금 해당 금액이 퇴직적립금 보관용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그 금원은 퇴직적립금 용도의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별도로 보관된 금원을 퇴직적립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체결한 '○○○어린이집 운영 위탁 약정서' 제4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린이집 재산관리와 사업운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청구인이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6조에서는 보조금의 횡령 또는 허위 집행 사실이 확인될 때 피청구인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과 체결한 운영 위탁 약정서에 따르면 보조금의 횡령 또는 허위 집행 사실이 확인될 때 피청구인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여기서 횡령 행위자는 운영자로 국한되지는 않고, 청구인 역시 ○○○을 원장으로 선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실질적 역할을 맡기고 청구인은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관리감독만을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소속된 원장의 보조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는 한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위탁해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행정심판 결정문

보조금유용, 행정소송,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